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1호
도시관리계획(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436호(2013.12.19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서교동 373-8외 1필지에 대하여, 2018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18.5.9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31일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마포구 서교동 373-8외 1필지 지정용도(관광숙박시설) 폐지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함.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마포구 신촌로, 양화로변 일대	270,547	-	270,547	1987.2.4	

②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사항
가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중 ‘용적률 결정(변경) 조서’

위 치	용도지 역	세부 변경내용			
		구분	기준 용적률	허용 용적률	상한용적률
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3-8외 1필지 (가구번호:SR-8)	준주거 지역	기정	250%	350%이하	•허용용적률×(1+1.3×가중치×α) +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※ 「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」 준용
		변경	250%	350%이하	•허용용적률×(1+1.3×가중치×α) ※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제7조 준용

나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중 ‘건축물 용도 결정(변경) 조서’

- 1) 불허용도 : 변경없음
- 2) 권장용도 : 변경없음
- 3) 지정용도(변경)

구 분		지정용도	비고
기정	서교동 354-5외 3필지	•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	
	서교동 354-10		
	동교동 167-113외 28필지		
	동교동 160-5 ㉠		
	동교동 162-5 ㉠		
	서교동 371-19 ㉡		
	서교동 373-8외 1필지		폐지
변경	서교동 354-5외 3필지	•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	
	서교동 354-10		
	동교동 167-113외 28필지		
	동교동 160-5 ㉠		
	동교동 162-5 ㉠		
	서교동 371-19 ㉡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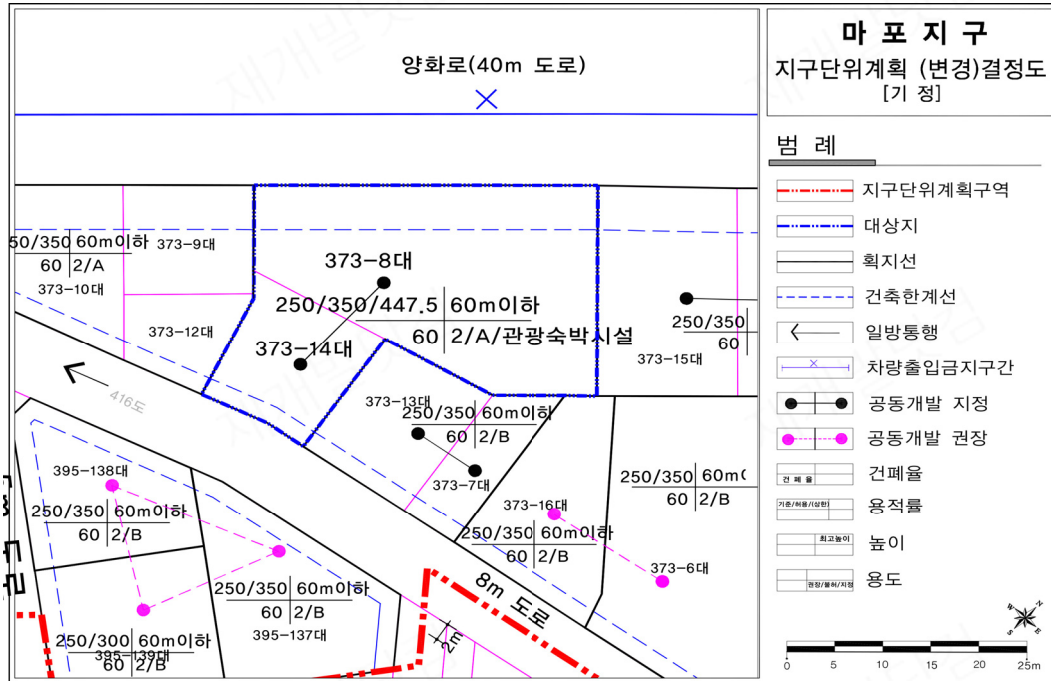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중 ‘공동개발계획(변경) 조서’ : 변경없음
 라. 그 밖의 기정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.

Ⅲ. 관계도면 : 첨부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※ 첨부된 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Ⅳ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(☎ 02-2133-8381)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(☎ 02-3153-9374)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.

■ 도시기반시설 결정(기정)도



■ 도시기반시설 결정(변경)도

